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제1항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28 선고 2000나34312 판결

전 문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조AA

【피고(재심원고),상고인】 박B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CA)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8. 선고 2000나34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99. 2. 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의 1999. 6. 10. 제1회 변론기일과 1999. 11. 18. 제4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출석한 원고(재심피고)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2회의 쌍방불출석이 되었으며,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1999. 11. 18.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위 1999. 11. 18.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2회의 쌍방불출석에 의한 항소 취하 간주되어 항소기간이 만료된 1999. 2. 24.로 소급하여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된 2000. 1. 19. 제기되었으므로 그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항소 취하 간주되어 그 항소기간 도과시에 소급하여 확정됨으로써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을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항소 취하 간주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강신욱 강신욱